

구 리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시 보

제2641호
2026년 03월 03일(화)

차 례

행정규칙

- 구리시 훈령 제512호 구리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공고

- 구리시 고시 제2026-34호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회람

구리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6년 3월 3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명) 백경현

구리시 훈령 제512호

구리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구리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경력
2.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총 무 과
입 안 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최 경 준
	팀 장 직위.성명	인사조직팀장 길 난 주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지방행정주사보 유승임 550-2122

구리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1. 제안이유

현행 규정은 청원경찰 보수 산정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청원경찰의 사기진작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경력 등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원경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제19조의2)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0-158호(2010.05.11.), 경기도 고시 제2013-108호(2013.04.23.), 경기도 고시 제2016-81호(2016.05.18.), 구리시 고시 제2016-83호(2016.07.20.), 구리시 고시 제2016-107호(2016.10.11.), 구리시 고시 제2017-121호(2017.10.13.), 구리시 고시 제2018-80호(2018.07.09.), 구리시 고시 제2018-171호(2018.12.28.), 구리시 고시 제2019-76호(2019.05.28.), 구리시 고시 제2020-65호(2020.05.27.), 구리시 고시 제2021-16호(2021.02.08.), 구리시 고시 제2021-21호(2021.02.26.), 구리시 고시 제2021-171호(2021.12.30.), 구리시 고시 제2023-33호(2023.03.17.), 구리시 고시 제2024-93호(2024. 8. 26.), 구리시 고시 제2024-96호(2024. 8. 29.), 구리시 고시 제2024-107호(2024. 9. 20.), 구리시 고시 제2025-63호(2025. 6. 17.)로 결정·고시된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 3. 3.

구 리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 개요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목표연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사유 : 인창C구역 확정측량성과도 반영에 따른 촉진구역 면적의 정정을 위한 변경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면적(m ²)	구성비(%)	면적(m ²)	면적(m ²)	구성비(%)
합 계		271,078.9	100.0	증)39.0	271,117.9	100.0
주거용지		118,572.4	43.7	감)39.0	118,533.4	43.7
상업용지		15,200.2	5.6	증) 7.1	15,207.3	5.6
종교시설용지		1,309.7	0.5		1,309.7	0.5
기반 시설 용지	소계	135,996.6	50.2	증)70.9	136,067.5	50.2
	도로	69,126.4	25.5	증)70.4	69,196.8	25.5
	공원·녹지	60,359.8	22.3	증) 0.5	60,360.3	22.3
	광장	1,216.5	0.4		1,216.5	0.4
	공공청사	3,973.6	1.5		3,973.6	1.5
	공공공지	1,320.3	0.5		1,320.3	0.5

2)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사유 : 인창C구역 확정측량성과도 반영에 따른 촉진구역 면적의 정정을 위한 변경

구분	촉진구역 내 계획 공원·녹지면적 ①	촉진구역 내 기존 공원·녹지면적 ②	촉진구역 내 확보 공원·녹지면적 ① - ②	면적비율 기준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5%이상)		세대당 면적기준 (세대당 3㎡ 이상)	
				촉진사업 구역면적	공원녹지율	촉진사업구역 계획세대수	공원·녹지 면적
기정	20,961.8㎡	5,743.0㎡	15,218.8㎡	209,768.6㎡ (10,488.4㎡)	7.26%	4,202세대 (12,606㎡)	3.62㎡ /세대
변경	20,962.3㎡	5,743.0㎡	15,219.3㎡	209,807.6㎡ (10,490.4㎡)	7.25%	4,202세대 (12,606㎡)	3.62㎡/ 세대

6) 교통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경관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촉진구역

- 변경사유 : 인창C구역 확정측량성과도 반영에 따른 촉진구역 면적의 정정을 위한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구역명	면적(m ²)	사업방식	구역명	면적(m ²)	사업방식	
합 계	3개구역	209,768.6	-	3개구역	209,807.6	-	증)39.0
촉진구역	인창C	50,487.0	주택재개발	인창C	50,526.0	주택재개발	증)39.0
	수택E	146,946.6	주택재개발	수택E	146,946.6	주택재개발	변경없음
도시계획 시설사업	A	12,335.0	-	A	12,335.0	-	변경없음

나. 준치관리구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준치관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하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권자가 별도 결정·고시한다.

가. 인창C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유 : 인창C구역 확정측량성과도 반영에 따른 촉진구역 면적의 정정을 위한 변경(용도지역 변경 없음)

용도지역		기 정		증 감	변 경		비 고
		면적(m ²)	비율(%)	면적(m ²)	면적(m ²)	비율(%)	
합 계		50,487.0	100.0	증)39.0	50,526.0	100.0	-
주거지역	소계	35,845.0	71.0	증)62.5	35,907.5	71.1	-
	제1종일반	-	-	-	-	-	-
	제2종일반	35,845.0	71.0	증)62.5	35,907.5	71.1	-
	제3종일반	-	-	-	-	-	-
	준주거	-	-	-	-	-	-
상업지역		14,587.0	28.9	감)23.5	14,563.5	28.8	-
자연녹지지역		55.0	0.1	-	55.0	0.1	-

나. 수택E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가. 용적률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타 건축계획 사항 및 지침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가. 촉진구역 기반시설부지 분담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기타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여성친화계획,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 적용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인창C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사유 : 인창C구역 확정측량성과도 반영에 따른 촉진구역 면적의 정정을 위한 변경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 경	주택 재개발사업	인창동 289-29 일대	50,487	증)39	50,526	경기도 고시 제2010-158호 (2010.05.11)	-

나. 수택E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 변경내역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50,487.0	증)39.0	50,526.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5,064.0	증)70.9	15,134.9	29.9	－
	도 로	13,435.0	증)70.4	13,505.4	26.7	－
	공 원	1,629.0	증) 0.5	1,629.5	3.2	－
상 업		11,309.0	증) 7.1	11,316.1	22.4	－
주 거		24,114.0	감)39.0	24,075.0	47.7	－

■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계획 용적률 (%)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인 창 C 구 역	50,487	50,526	C-1	24,114	24,075.0	인창동 297-2 일대	공동주택 주상복합	50이하 70이하	280.0이하 600.0이하	
			C-2	7,754	7,736.8	인창동 288-16 일대				
			C-3	3,555	3,579.3	인창동 280-12 일대				
주거면적비율			● 구리 인창·수택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1,180세대 [임대 60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108세대(9.2%) [임대 33세대] - 전용면적 40㎡초과~60㎡이하 : 553세대(46.8%) [임대 27세대] -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 394세대(33.4%) - 전용면적 85㎡초과 : 125세대(10.6%) ● 임대주택 건설 - 임대주택의 건설은 전체세대수의 5%이상 계획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구리 인창·수택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등 기타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 고 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7	22	보조 간선도로	221 (232)	대1-1	중1-14	일반도로	-	경고10-158호 (10.5.11)	
기정	중로	2	48	13	국지도로	314	중1-17	중2-40	일반도로	-	경고10-158호 (10.5.11)	
기정	중로	3	35	12	국지도로	46	대1-1	중2-48	일반도로	-	경고10-158호 (10.5.11)	
기정	중로	3	41	12	국지도로	227	중1-17	소로3-47	일반도로	-	경고10-158호 (10.5.11)	
기정	소로	3	55	6	국지도로	70	대1-1	소1-7	일반도로	-	경고78-223호 (78.5.25)	

※ ()는 시설 전체에 대한 사항임

※ 도로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없으며, 확정측량성과도 반영에 따른 단순 면적의 정정을 위한 변경
(도로면적 기정 : 13,435 → 변경: 13,505.4㎡ 증)70.4㎡)

■ 공원

- 변경사유: 인창C구역 확정측량성과도 반영에 따른 촉진구역 면적의 정정을 위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50	공원	어린이공원	인창동 296	1,629	증)0.5	1,629.5	경고 제2010-158호 (2010.05.11)	

■ 녹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광장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공공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공청사 [변경없음] - 게재생략

17)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변경없음] - 게재생략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